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자료출처/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2495호
정 리/홍 보 과

◎ 노동부령 제8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3년 8월 19일

노동부장관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중 “교육관계법령의 규정에”를

“교육법에”로, 동호 단서중 “이수한 자”를 “마친 자”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수자”라 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 훈련과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계 학원의 직업훈련과정, 과학 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사내기술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에서 사회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회교육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2조 제3호 본문중 “교육관계법령의 규정에”를

“교육법에”로, 동호 단서중 “이수한 자”를 “마친 자”로 하고,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수예정자”라 함은 검정수검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과정의 10분의 7이상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2조의10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별표 4 및 영 별표 5에서 “노동부령이 정

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함은 별표 1의 3의 기술훈련과정을 말하며, 기술훈련과정별로 응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종목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조의10 제2항중 “기능사 1급의”를 “기사 2급 또는 기능사 1급의”로, “산학협동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를 “산학협동훈련과정의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로 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5조 제1항에 제4호단서 및 동항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종목 또는 명장으로 선정된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종목(동일한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종목등 응시자가 선택하는 1종목)에 한한다.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종전의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함은

별표 1의 3의 기술훈련과정을 말한다.

④ 영 제1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 2급(또는 기능사)의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기술자격종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과정으로 한다.

1. 실업계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의 기술훈련과정
2.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과정
3.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계학원의 직업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600시간이상인 과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 외의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600시간이상인 과정

제4조 제5항(종전의 제4조 제4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고, 동조 제6항(종전의 제4조 제5항) 중 “영 제15조 제1항 제7호의”를 “영 제15조 제1항 제10호의”로 한다.

제17조 중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7호의 2서식에”를 “별지 제7호 서식에”로 한다.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의 2서식에 의한다.

제26조 제1항 중 “별지 제16호의 4서식에”를 “별지 제16호의 5서식에”로 한다.

제31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36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보수교육실시 위탁기관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기관이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인원·시설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 3:생략]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령 내용증 [별표 4] 중 3부터 [별지 제16호의 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까지의 내용은 생략한다.

[별표 1]

보수교육종목 및 교육기관(제2조의 2 및 제31조 관련)

주무부장관	보수 교육 종 목	교 육 기 관
내무부장관	소방설비기술사	•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2급	
문화체육부장관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 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터
	영사기능사 1급 영사기능사 2급	• 한국영사기사협회
상공자원부장관	전자기사 1급 전자기사 2급	• 한국산업훈련협회
	사출금형기능사 1급 프레스금형기능사 1급 공업계측제어기사 1급 공업계측제어기사 2급	•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전자기사 1급 및 전자기사 2급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
	일반기계기사 1급 일반기계기사 2급	• 생산기술연구원 • 대한전기기사협회(일반기계기사 1급 및 일반기계기사 2급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
	가스기사 1급 가스기사 2급	•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기계기능사 1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 2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 2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2급	
	보일러기기사 1급 보일러기기사 2급	• 에너지관리공단
	보일러기능사 1급 보일러기능사 2급	•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
	보일러시공기능사 2급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기공사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2급	• 한국전기공사협회

■ ■ 신법소개①

주무부처관	보수교육종목	교육기관
상공자원부장관	전기공사기능사 1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전력설비기능사 1급	• 대한전기기사협회
	발전설비기능사 2급	
	변전설비기능사 2급	
	송배전설비기능사 2급	
	전기기사 1급	• 대한전기기사협회
	전기기사 2급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 법에 의한 교육대상자)
	광산보안기사 1급	•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산보안기사 2급	
건설부장관	토목시공기술사	• 건설기술교육원
	토목기사 1급	• 대한전기기사협회 (전기사업법에 의한 교육대상자)
	토목기사 2급	•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 (토목기사 1급 및 토목기사 2급 중 전기통신공
	건축기사 1급	사업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
	건축기사 2급	
	건축설비기사 1급	
	건축설비기사 2급	
	의장기사 1급	
	의장기사 2급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사 1급	
	건설기계기사 2급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1급	
	조경기사 2급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사 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2급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 한국기술협회
	토목구조기술사	•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업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자)
	항만 및 해안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 한국기술협회
	건축구조기술사	•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업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주무부처관	보수교육종목	교육기관
건설부장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의한 교육훈련대상자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1급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공조냉동기계기사 2급	•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업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자)
	측지기술사	• 대한측량협회
	측지기사 1급	•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업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자)
	측지기사 2급	
	증기정비기사 1급	• 한국증기정비협회
	증기정비기사 2급	
	증기정비기능사 1급	
노동부장관	증기차체정비기능사 2급	
	증기기관정비기능사 2급	
	※ 측량기능사	• 한국산업훈련협회
	기능장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기계기공기능사 1급	• 대한전기기사협회 (전기사업법에 의한 교육대상자)
	기계조립기능사 1급	
	전기기기기능사 1급	
	주조기능사 1급	
	정보처리기능사 1급	
	전자기기기능사 1급	• 한국전자통신공사협회 (전자기기 기능사 1급 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
산업부장관	배관기능사 1급	• 한국산업훈련협회
	건축배관기능사 2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용접기능사 1급	
	전기용접기능사 2급	
	가스용접기능사 2급	
	특수용접기능사 2급	
	판금기능사 1급	
	일반판금기능사 2급	
	타출판금기능사 2급	
산업안전기관	전자기기기능사 2급	
	차자제산기기능사 2급	
	전기기기기능사 1급	
	전기기기기능사 2급	
산업안전협회	선반기능사 2급	
	다듬질기능사 2급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기사 1급	

주무부장관	보수교육종목	교육기관
노동부장관	산업안전기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대상자)
	건설안전기사 1급 건설안전기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기술교육원(건설업법에 의한 보수교육대상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자) 한국산업안전공단(건설안전기사 1급 및 건설안전기사 2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대상자)
교통부장관	자동차정비기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정비기사 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	
	자동차검사기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안전진흥공단
	자동차검사기사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1급	
체신부장관	유선설비기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해기연수원(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전파통신기능사 ·전파전자기사 1급 ·전파전자기사 2급 및 전파전자기능사증 선박직원법에 의한 교육대상자와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증 대응령령 제13, 673호 전파법시행령 부록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
	유선설비기사 2급	
	교환설비기능사 1급	
	선로설비기능사 1급	
	전파전자기사 1급	
	전파전자기사 2급	
	※전파전자기능사	
	무선설비기사 1급	
	무선설비기사 2급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전파통신기능사	
	정보통신설비기사 1급	
	정보통신설비기사 2급	
과학기술처장관	기술사(다른 보수교육기관 시행기술사 종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기술사회
	비파괴검사기사 1급 비파괴검사기사 2급 ※비파괴검사기능사 원자력기사 1급 정보처리기사 1급 정보처리기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학기술원
경찰청장	화약류관리기사 1급 화약류관리 2급 화약류제조기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주무부장관	보수교육종목	교육기관
경찰청장	화약류제조기사 2급 ※화약류급기능사	
농촌진흥청장	농기계정비기능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진흥청
수산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제조기사 1급 수산제조기사 2급 수산양식기사 1급 수산양식기사 2급 어병행역기사 1급 ※수산양식기능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공무원교육원
공업진흥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기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공업표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량기체기사 2급 제량천기기사 2급 제량물리기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
철도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보선기사 1급 철도보선기사 2급 보선기능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철도보선기술협회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항 별표 1의 3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추가보수교육종목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된 보수교육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1975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등록한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등록한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1985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등록한 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